

2011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대한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인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승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한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매년 1월이면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월 31일까지가 아니라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면세사업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이 각각 달라 잘못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변경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2010년 귀속분의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하도록 기한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부분이다.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현황신고기한에 대한 규정은 개정되어 기한이 2월 10일까지로 연장되었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에 대

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아 당초대로 1월 31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종전에는 사업장현황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도 함께 제출했었지만 지금은 사업장현황신고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이 일치되지 않고 하나는 2월 10일까지, 다른 하나는 1월 31일까지로 나누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들은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모두 끝내든지, 아니면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1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종전처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업장현황신고와 함께 2월 10일까지 하는 경우에는 합계표제출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1월에는 부가세 확정신고가 있어 사업장현황신고 준비에 있어 업무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세

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연장되지 않아 이종으로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올해 사업장현황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있어서는 기한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합계표 제출의 방법에도 종전과는 차이가 있다. 종전에는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장현황 신고서와 첨부하여 제출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이 다르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우선 별도로 제출하려면 전자제출을 할 수가 없으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따로 할 경우에는 우선 1월 31일까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함께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전자신고해야 한다. 이때, 현황신고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표시해 주어야 한다.

〈참고법령〉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

축산업자가 사료 등 축산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민에 대하여 농림관련 특례규정에 규정되어 있었던 바, 세법개정으로 개인축산업자 중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그 농어민의 범위가 조정되었다.

또한 약품 등 축산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받는 농어민도 동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가 조정된다.

종전에는 개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이기만 하면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축산업자라고 하더라도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은 축산업자들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해당 기자재를 공급할 때 판매자들은 개인축산업자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축산업자들도 해당 기자재를 종전과 같이 영세율로 구입하려면 사전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교부받아두어야 할 것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당해 농업인의 성명·주소, 가축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가축종류별 사

육두수 및 출하량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이후에 당초 등록한 성명·주소, 가축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변동된 경우 또는 가축종류별 사육두수 및 출하량 정보가 일정량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참고법령〉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

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공정위, “작심삼일” 헬스클럽, 이용료 환급받으세요

2월 1일부터 결혼증매업체, 헬스클럽, 미용실, 인터넷강의, 학습지 등을 이용하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위약금만 내면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규정’ 기준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1개월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계속거래의 경우 명확한 환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내 결혼증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마련했다.

결혼증개업은 총계약대금의 20%, 헬스·피트니스업과 학습지업은 10% 이하의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컴퓨터 통신교육업과 미용업 등은 계약한 날로부터 각각 7일 이내, 20일 이내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컴퓨터 통신교육업과 미용업은 위약금을 총계약대금의 10% 이상 벌을 수 없다.

소비자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 계약을 맺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출처: 뉴시스